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업체 주지 사항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DCA)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업체들이 번창할 수 있는 시장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소비자 보호국은 소비자와 업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 및 주의 법을 집행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장려하는 법들, 특히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관련법규의 사본을 받아 보고자 하시면, 311로 전화를 주시거나 42 Broadway, 5th floor, Manhattan에 위치한 소비자 보호국 면허 센터 (Licensing Center)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아래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뉴욕 시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오락상가 운영업

놀이 기구 운영업(탈 수 있는 임시 또는 고정 설치 기구 및 이동식 기구 포함)

경매장

경매인 (및 야간 경매인)

당구장

빙고 게임장 운영자 및 영리목적 임대인

컴퓨터 부팅 회사

카바레 (디스코장 포함)

요식 조달업

담배 소매업

장애인용품 판매업

대리 수금회사

전자 및 가전용품 서비스업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관리자

차고 및 주차장

운 게임 업(Game of Chance)

일반 납품업

일반 납품 유통업

주택수리업

주택수리 세일즈맨

어떤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국의 면허가 필요합니까?

마차

마차 운전자

세탁장

세탁물 배달 대리인

세탁장 종사원

열쇠공

열쇠공 견습생

영상물 촬영기사

신문 판매대

전당포 주인

집달리

집달리 협회

저울 판매상

저울 수리

고철 가공업자

중고품상

중고 자동차 판매상

중고 총기 판매상

노점 카페

관광버스

관광 가이드

특별 할인업

손수레 행상

창고업

노점상(30일간)

티켓 재판매 중개인

티켓 재판매 직원

견인트럭 회사

견인트럭 운전기사

면허 신청 및 보다 상세한 구비요건을 원하시면 311 (뉴욕 시 밖에서 전화하시는 경우에는 212-NEW-YORK)로 전화를 주시거나 www.nyc.gov/consumers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개인기록의 보존

주의: 만일 소비자 보호국에서 면허를 받은 업소가 그 개인기록을 보관 유지하고 있는 도중 동 기록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었을 경우, 해당 업소는 뉴욕 경찰국 및 소비자 보호국, 그리고 해당 고객에게 그와 같은 보안위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소비자 보호국 관할 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 및 영업 면허취소를 비롯하여 형사 처벌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클레임(청구) 행위

업체는 소비자 물품 및 서비스 판매 또는 판매 제안 시, 허위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어떠한 클레임(청구)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판매 및 할인 판매, 선전까지 포함하며, 구두 및 문서 표시 모두에 해당됩니다.

영수증

\$20 이상의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5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합니다:

- _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충분한 설명
- _ 각 구매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목별 가격
- _ 각 품목별로 지불된 세금
- _ 구매일자
- _ 등록된 업소 명 및 주소

_ 업소의 소비자 보호국 면허번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업소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판매업자의 실제 등록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각 금전등록기에 붙여진 표시판에 게시되어야 하며 \$50 이상의 상품 및서비스 계약마다 인쇄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소의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은 그러한 서비스가 모든 대리점들에서도 다 같이이용 가능한 것인 지 밝혀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기준

신용카드를 받는 업소는 (" 카드 사용 최소 금액은 \$10 이상" 또는 "추가 신분확인 필요"와 같은) 카드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들을 소비자 및 고객의 눈에 잘 띄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환불 기준

업소는 환불 기준, 신용 기준 및 물품 교환 기준을 비롯한 모든 해당 조건들을 명시한 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이 표시판은 대금을 지불하는 장소에 붙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판이 없는 경우, 업소는 20일 이내에 구매된 상품은 환불하여 주어야 합니다. (단, 음식물, 쉽게 상하는 물품, 고객 주문품 또는 고객 주문 완료 제품 및 "현 상태 그대로"라는 조건하에 판매된 상품들은 제외됩니다.)

특별 오퍼

모든 광고물 및 판촉물들은 특별할인에 따르는 제한 사항들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특별 가격 서비스 광고에는 다음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특별 가격이 특정 기간 중에만 제공됩니다.
- 특별 오퍼는 구매량이 최소 또는 최대 얼마가 되었을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물품 교환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달 또는 우편 주문일 경우에 추가 요금이 부과 됩니다

계약 취소

소비자 서비스 또는 상품의 구매계약은 판매자가 계약 이행 시 판매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불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님"으로 묘사되지 못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계약취소에 대한 추가 요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격 표시

신상품의 판매가격이 제조업자 권장 소매가 또는 카탈로그 가격보다 비싼 경우, 판매자는 그 상품의 판매가와 제조업자 권장 소매가 또는 카탈로그 가격을 가격 꼬리표나 라벨에 눈에 잘 띄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 어느 가격인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MSRP"와 같은 약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게 및 측량

무게로 상품을 파는 판매자는 뉴욕 주 승인 3급 상업용 저울 (Class III Legal-for-Trade Scale)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저울은 소비자 보호국 검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저울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311로 전화하셔서 소비자 보호국의 무게 측량과 (Weights and Measures Division)로 문의하십시오. 소비자 보호국은 저울의 제품 번호 및 제조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판매

뉴욕시 법은 다음 상품들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

- 분사식 도료(spray paint)
- 부식용 산(etching acid)
- 끝이 넓은 삭제 불능 마커(broad-tipped indelible markers)
- 레이저 광선 포인터(laser pointers)
- 천연 흡연초 (herbal cigarettes)

뉴욕 시법은 21세 미만인 자에게 상자용 절단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뉴욕 시는 또한 다음 품목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 모터가 달린 스쿠터
- 짙은 색의 모형 총기 또는 장난감 총기

리타기리오(Litargirio)

리타기리오의 판매는 뉴욕시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리타기리오는 노란색 또는 복숭아색의 가루로서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제조되며 때로는 전통적인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리타기리오는 납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어린이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종류

시 법은 뉴욕 법에 의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선포된 동식물의 종류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라벨에 표시된 상품의 판매 및 구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뿔소, 호랑이, 표범, 바다 거북이 등의 모든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럴 우려가있는 것으로 선포되었으며 이 동물들을 원료로 한 것이 표시된 상품은 뉴욕시에서 구매 및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페인트 제거 제한

마른 상태에서 페인트를 긁거나(dry scraping) 가는 행위(dry sanding)를

하는 것은 납 성분의 독성 때문에 뉴욕시에서 불법입니다. 페인트 제거제나 샌딩 도구를 판매하는 상점들은 다음과 같은 표시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마른 페인트의 드라이 샌딩 및 드라이 스크래핑은
불법입니다**
가정, 유아원 및 학교에서
항상 습식(wet method)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경고 표시는 상점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료 표시판 또는 시에서 발간 하는 무료 안내 책자 "Healthy Homes"를 원하시면 311로 전화를 하시거나 www.nyc.gov/consumers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충제

살충제 판매대 근처에 경고문을 붙여야 하며, 살충제는 뉴욕 주 환경 보존국 지정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고주의를 뜻하는 문구가 표시판에 포함되어야 하며 구매자에게 살충제 사용 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통고해야 합니다.

공급 부족

(기후 비상사태, 연료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어떤 물품이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가 되는 경우 특별조치가 취해집니다. 소비자 보호국 국장이 물품 공급 부족 상태를 선포하는 경우, 판매자는 공급부족 사태로 인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가격 변동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가격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급 부족에 관한 주의: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는 판매자가 해당 품목을 제공하기 위해서또는 해당 품목의 구매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고유 잘못이 아닌 상황에 의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상점들은 광고된 품목들을 광고한 가격으로 적절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판매자는 광고된 품목의 판매에 관련되어 생긴 상황이나 한계점들을 명확히 기술한 표시판을 눈에 잘 띄게 걸어야 합니다. 주의: 물품 예약 보증(rain checks)을 하는 것은 상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또한 해당 상점을 법을 위반한 책임으로 부터 자동적으로 면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할부제

할부제라 함은 한 가지 물품이 \$50 이상의 가격으로서 최소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대금 지급 방법입니다.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의 할부제 조건을 문서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물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총금액
- 세금
- 배달, 할부제 사용 및 취소에 따른 추가 비용
- 할부기간
- 납부일정 및 미납에 따른 연체료 또는 벌금
- 해당 상점의 환불 조건
- 재고 상태에서 이미 해당 상품이 제외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언제, 어디서 해당 상품이 소비자를 위해 보관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중고품의 판매

중고 상품 취급업자는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광고문 또는 판매거래 시에 중고품의 판매자는 "중고," "골동품," "전시용," "시범용," 또는 "개조품" 등의 라벨을 작성하여 광고된 상품이 신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판매촉진

판매촉진 행사에 참여한 잠정 고객에게 경품이 주어지는 경우, 경품 제공시 고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 문서를 받아야합니다:

- 경품 중에서 가장 싼 물품과 가장 비싼 물품 또는 물품 꾸러미의 가격을 포함하여 해당 경품의 정확한 설명과 화폐가치의 표시
- 경품에 부수되는 모든 요구사항 및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 고객이 따라야 될 판매촉진 행사 규칙에 관한 설명서

특정 업체별 해당 규칙:

전자 및 가전제품 서비스 업자

전자 및 가전제품 서비스 업자는 수리 시 교체된 모든 부품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단, 하자 보증 수리 절차상 그 부품을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비스 업자는 소비자 보호국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업자는 소비자 보호국이나 다른 법집행 공무원들이 검사 목적으로 이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될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사기 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소개한 경우
- 면허 취득을 위해 자신의 자격 실체에 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 다른 업자의 사기 행위나 허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
- 시, 주 또는 기타 해당 광고 및 상거래가 이루어 진 곳의 지역 법에 의하여 허위사실이거나 오도하거나 속임수라고 판단되는 광고 또는 불법 판매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경우
-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거래
-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품목별 계산서를 문서상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면허가 요구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자의 능력 또는 적절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파기록

자동차 대여업자

뉴욕시에서 자동차 대여업자는 대여 계약의 일부로서 일일 최대 \$9-\$12불의 충돌 손해 배상 면제 (Collision Damage Waiver)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충돌 손해 배상 면제는 대여차량의 손상만을 보상합니다. 소비자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고 충돌 손해 배상 면제 보험을 구입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소비자는 대여차량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여업체가 소비자에게 대여차량의 손상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업체는 뉴욕시의 일반 상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충돌 손해 배상 면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차량손상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 및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와 대여업자간에 동의한 시간에서 부터 30분 이내에 예약대로 차량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소비자가 예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예약한 차량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같은 좌석수가 있고 동 소비자의 필요 및목적에 부합하는 차량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약 및 차량반환 날짜에 관한 기록은 최소 6개월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대여업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권리를 고객이 될 수 있는 대상들에게 설명해 주는 표시판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합니다:

"불만사항 신고를 위해서는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으로 연락하십시오. 42 Broadway, New York, NY 10004, 신고전화번호: 311."

전자 상품점

5개의 지역구(borough) 내에 있는 모든 전자상품 점포는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으로 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진열대 또는 진열선반의 모든 판매 상품에는 세금 공제 전의 판매정가가 적힌 스탬프, 꼬리표 또는 라벨을 부착하든지 혹은 잘 보이는 표시판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정기적으로 전자상품 점포들을 시찰하며 소비자들의 불평에 대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기록, 장부, 영수증 및 계산서들을 항상 최근의 자료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식품 소매업자

식품 판매점에 적용되는 법들에 따르면 모든 가게들은 상품이 놓여 있는 선반에 단가(계량 단위당 가격)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품목에는 시가가 찍혀져 있어야 합니다. (단, 냉동식품 및 특별 전시 품목 등은 예외입니다.)

출고시에 이미 포장된 과일 및 채소의 라벨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순 무게(net weight), 파운드당 가격, 판매정가
- 상품의 공통 명칭 또는 설명
-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 및 주소

"최고급 (Top Grade)"이나 "미국 최고 품질 (US Finest)"과 같이 점포 개별적으로 정한 육류의 등급 광고는 미국 농무부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공식 등급이 아니거나 또는 그 육류의 등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문구를 개별 광고문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작성되어 그 개별적인 광고 문구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 한은 그러한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저울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설치되어서 소비자가 저울, 파운드당 가격 및 무게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거나, 녹슬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심하게 찌그러진 금속 용기(깡통) 또는 구멍이 난 꾸러미나 밀폐되지 않은 진공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식품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일, 채소 및 꽃을 옥외에 진열하는 상점은 소비자 보호국의 노상 판매대 (Stoopline Stand)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뉴욕 주의 모든 장례식장은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 및 시 보건부로 부터 면허를 받은 장의사만이 사망자의 관리, 운구준비, 매장 및 화장을 위한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는 또한 사망진단서를 청구하며, 시신을 옮기고, 묘지 및 화장지 측 대표자와

협조하며, 시신을 묘지 및 화장지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최소 10퍼센트 소유권을 가진 모든 장의사의 이름과 최소 10퍼센트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조직의 명칭을 적은 표시판을 건물의 주요 입구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이용 소비자가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상으로 장례식 절차를 준비할 때 이용 소비자에게 일반 가격목록을 제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목록은 장례식장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및 상품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시신 관 목록이 있다면 장례식장은 이 목록을 이용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소비 이용자가 구입 또는 제공한 관을 사용하여 매장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용 소비자가 직접 매장 또는 직접 화장을 주문하는 경우 이의 기본적인 준비에 대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대신 소독하기 위하여, 또는 시신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있다면 이를 눈에 잘 띄게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의사도 시신의 사인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시신 방부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묘지, 사망진단서 및 성직자 비용과 같이 제삼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해 이윤을 남길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서비스 및 상품의 품목별 계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산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각 품목별 가격, 현금서비스(cash advance) 등을 포함한 총 비용에 대한 상세한 요약입니다.

이용 소비자가 언제라도 장례식장을 변경기로 결정을 하면 장례식장은 시신을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시신을 대금 지불과 맞 교환 조건으로 하여 유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의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하도록 강권하는 행위

- 사망신고서 신청이나 의사에게 사망신고서의 증명을 받는 것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 제 삼의 업자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고객이 제공한 관을 다루는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 장례준비 절차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명시되고 품목별 계산서에 기록되지 않은 한, 미지불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
- 고객이 선택하지 않은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 면허를 가진 장의사가 아닌 사람이 장례절차, 시신준비 및 매장감독을 하는 행위
- 장례식 관리에 관련된 법 및 규정을 잘못되게 설명하는 행위

장례비용에 관한 뉴욕시 행정법규조항을 위반한 자는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게됩니다.

가구 및 주요 전자 제품의 배달

가구 및 주요 전자 제품의 판매자는 구매자가 계약서 또는 판매 전표에 서명할 시에 구매자 에게 해당 물품 배달 일자를 알려줘야 합니다.

상품이 배달 일자까지 배달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계약 취소
- 새로운 배달 일자의 배정
- 크레딧 허용
- 다른 상품의 선택

환불은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는 새로 배정된 배달 일자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 규칙은 "주문 제작된 (custom made)"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배달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 일자가 하나 이상 배정된 경우에는 이 규칙 조항은 가장 나중의 배달 추정 일자에 적용됩니다.

주요소

갤런 당 가격, 원료, 품질 또는 기타 확인 사항 (상호, 브랜드, 기호 또는

마크) 없이 가솔린을 파는 것은 뉴욕시에서 불법입니다.이의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징역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갤런 당 납 함유량이 .05 그램보다 많은 제품을 무연 가솔린으로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설비 시설 및 제반 관련 업무 기록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법규들의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기 조사를 시행하고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민 서비스 제공업자

이민 서비스 제공업자는 모든 서비스를 항목별로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언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관할 부서에 신청사항을 접수시켜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법률상의 조언을 못할 수도 있으며, 예탁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어떠한 계약이라도 3일 이내에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는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불까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변호사, 비영리 단체, 연방정부 인가 이민 서비스 제공업자,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정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3-1-1로 전화하셔서 이민 서비스 안내를 요청하십시오.

보석상

뉴욕 시 법은 모든 보석 감정은 제품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를 문서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매 환산 가치 (retail replacement value)"가 기준일 경우, 감정가는 실제 소매가의 근사치일 뿐이라는 것과 소비자가 감정가로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판매 영수증은 정확한 다이아몬드 등급과 캐럿 중량 (carat weight)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75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보석 품목에 대해서는 항상 그 성분비를 밝히는 판매 전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중량이 소수 자리인 경우, 그 숫자는 끝자리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30 캐럿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최소 .295 캐럿에서 최대 .304 (반올림하면 .30이 되는 숫자) 캐럿일 수 있습니다. 중량이 분수인 경우, 판매자는 다이아몬드 중량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합당한 중량 범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frac{1}{2}$ 캐럿은 .47과 .54 캐럿 사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착색 처리와 같이 보석에 가해진 가공 또는 품질 개선된 보석은 그 가공 처리의 영구성과 그 보석의 특별한 관리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모든 예비 고객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주화(coin)," "동전 주조용 은(coin silver)," "순은 제품(sterling)" 또는 "순은(sterling silver)"라고 표시된 모든 금속제품은 뉴욕 주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량의 순은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세탁장

세탁장, 세탁물 배달 대리인 및 세탁장 종사원은 소비자 보호국으로 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사업체의 소비자 보호국 면허 번호와 함께 다음 장소에 게시 되어야 합니다:

- 세탁물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
- 면허취득자가 발행 또는 배포한 모든 청구서, 티켓, 카드, 광고 및 사무용 서류 일체
- 모든 판매 계산서(bill of sale)는 세탁비용의 계산과 아울러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독립 사업자 및 종사원들은 작업 도중에 있는 한 세탁소에서 다른 세탁소로 옮길 때 소비자 보호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자는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장소가 매각되거나 점포 소유권에 변화가 진행 중인 경우 소비자 보호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전 투입으로 작동되는 자가 세탁장은 오후 6시부터 폐점할 때까지

종업원이 점포에 있어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종업원이 자리에 없는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사항 및 환불요구를 할 수 있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최소 2 인치 높이의 글자와 번호가 적혀진 표시판을 점포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약국

뉴욕시의 모든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의 소매 목록이 있습니다. (Prescription Drug Retail List is Available)"라는 문구가 적힌 사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주 법에 따르면 모든 약국들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150개의 가장 자주 처방되는 약의 최신 소매가격을 표시한 인쇄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인쇄물은 과거에 약국에서 쓰였던 "커다란 핑크" 포스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 요구되는 표시판을 게시하지 않거나 최신의 약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약국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용 피임약을 팔지 않는 약국은 "이 약국에서는 사후 피임약을 팔지 않습니다 (no morning-after pills are sold at this pharmacy)"라고 적힌 (최소 8½ x 14인치)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재고가 떨어진 약품이 있을 경우 표시판에 그 약품이 "현재 재고는 없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고객이 요청을 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suchdrugs] are not currently in stock but will be available within 12 hours after the customer requests that a prescription for [such drugs] be filled)" 라는 문구를 적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약국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여행사는 각각의 판매 티켓 또는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요금표 보다 1불 이상 웃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철도회사, 선박회사, 항공사 및 버스 회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예약권 또는 승객 숙박시설의 요금까지 포함합니다.

이 시 법을 위반하는 티켓 판매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 및/또는 구속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시 법은 미국 대륙 (알래스카 제외) 및 캐나다 밖의 지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티켓, 예약 또는 승객 숙박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사와 법인, 회사, 국가 기관들의 여행자 또는 여행 서비스까지 포함하여서 그들과 기존의 문서상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법에 의하면 뉴욕시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현행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법 (Consumer Bill of Rights Regarding Tax Preparers)**의 판독이 가능한 사본을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 직업 회계사) 및 그 직원들, 피 신탁인, 회사에 고용되어서 당해 회사의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 그리고 업무의 일환으로 세무관련 일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 업체의 실명을 사용하여 모든 세무신고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각 세무신고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계산서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에게 모든 개인 서류를 반납합니다.
- 서비스를 해주기로 약속한 경우 모든 감사 시에 진술을 해 줍니다.
- 세금반환 사전대출 (Refund Anticipation Loans)을 고객에게 제안할 때, 동 사전 대출에 관한 기본적 내용, 비용 및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된 선전물을 제공한다.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법 참조)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무신고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서명한 이후에 내역을 바꾸는 행위
- 사실을 명백히 알리지 않고 실제로는 이자가 가산되는 대출을 "즉각적인 세금 환급 (instant tax refund)"인 것처럼 납세자에게 말하는 행위
- 납세자에게 백지 수표 또는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세금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자신의 자격을 속여서 말하는 행위
- 세무 보고서에 나타나 있거나 또는 관계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아닌 어떠한 개인 또는 업체,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주는 행위
- 납세자가 정부규정, 규범 또는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최소 한명의 공인 회계사나 직업 회계사가 각 세금보고 준비 장소에서 업무 시간 중에 같이 참석하여 모든 세금보고 준비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계사(accountant)"라는 단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 세무사가 관련 분야의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서 전공 또는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 납세자가 서명을 한 후에 세금 보고서를 납세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바꾸는 행위
- 지불해야 할 세금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금의 액수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
- 세금 환급을 보장하거나 납세자가 정부 세무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행위
- 환급될 세금의 일부를 세무사에게 배정하도록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그렇게 허락하는 내용을 담은 위임장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의 주소를 세금 환급액의 우편배달 장소로 쓰는 행위

세무사는 세금반환 사전대출(RAL)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근로 소득세액 공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기타 환급액이 신속하게 지불받을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세무업무나 기타 세무업무의 선택적인 장치에 관한 안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합니다.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법 (Consumer Bill of Rights Regarding Tax Preparers)**의 사본을 받고자 하시면 311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www.nyc.gov/consumers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소매상

뉴욕 주의 담배 소매업자는 시의 세무 재정부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뉴욕시의 담배 소매업자는 소비자 보호국 면허도 취득해야 합니다..

주 및 시 법에서는 담배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자는 주와 시 모두로 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미성년에게 판매. 18세 미만의 개인에게 (bidis 및 gutka를 포함한) 담배제품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요구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의 판매. 담배제품 판매 시, 고객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그것들은 운전면허증이나 미국 주 정부가 발행한 다른 신분증, 또는 연방정부나 미군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여타 국가의 유효한 여권 등입니다.
- (판매원은 최소 25살이 되어 보이는 소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소비자가 실제로 미성년자이었을 경우 그 소비자의 외모가 부당 판매의 변명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날개 담배 판매 행위.

•다음과 같은 문구가 최소한 ½인치 높이의 빨간 글자로 하얀 카드에 적힌 표시판을 분명하게 게시하지 않을 경우:

"담배, 여송연, 씹는담배, 가루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 천연 흡연초, 담배 마는 종이 또는 흡연 파이프를 18세 미만의 자에게 파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Sale of cigarettes, cigars, chewing tobacco, powdered tobacco, or other tobacco products, herbal cigarettes, rolling papers or pipes, to person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is prohibited by law)."

주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적절한 보관. 판매용 또는 전시용 담배제품 및 약초 담배는 열쇠가 잠긴 용기에 넣거나 카운터 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판기를 운영하는 행위
- bidis(비디)의 판매 행위(담배 가게로 부터는 예외)

이 밖에도 시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8세 이하의 직원이 18세 이상인 자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담배제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행위

시 담배 관련법의 위반은 최대 2,000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가로 주 법에 의거하여 다시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국의 담배 판매 면허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 담배 관련법의 위반은 위반 시마다 상당한 벌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 도매업 등록 및 복권 판매 면허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자는 시가 지정한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한적으로 처벌 면제를 위한 선택 사항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은 소매업자들이 법을 알고 준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담배 판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800) 458-1158으로 전화하시거나
www.health.state.ny.us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중고차 판매자

뉴욕시의 모든 중고차 판매자는 유효한 소비자 보호국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 경매장들도 소비자 보호국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증은 중고차 대리점에서 잘 보이도록 전시되어야 하며, 면허번호는 광고나 영수증과 같은 문서자료에 눈에 잘 띄게 넣어야 합니다.

뉴욕 주에서의 중고차 구매자는 100,000마일 미만의 마일리지에 1,500불 이상의 가격에 매매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판매자가 하자 수리 보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레몬(lemon)"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뉴욕 중고차 판매자 및 경매장으로 부터의 중고차 구입 및 리스 임대는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이동주택 자동차 (motor home), 일반 포장도로 밖에서 사용되는 차량 (off-road vehicles), 또는 개인으로 부터 구입한 중고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너무 낮거나 마일리지가 너무 높거나 해서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해도 주 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이 검사를 받았고 적절한 상태에 있으며 도로 주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을 "현 상태대로(as is)"로 파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시점에 차량의 마일리지에 근거해서 일정한 숫자의 마일리지 마다 하자 보증 수리(warranty)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마일리지 하자 수리 보증

0-36,000 - 90일 또는 4,000 마일

36,001-79,999 - 60일 또는 3,000 마일

80,000-100,000 - 30일 또는 1,000 마일

이 수리 보증은 엔진, 변속장치, 구동축, 브레이크, 라디에이터, 스티어링, 교류 발전기 등에 적용됩니다. 만일 중고차 판매자가 세 번의 시도 후에도

어떤 결함을 고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